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26

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:이원택·박홍배·안호영

송옥주 · 김승원 · 윤준병

한병도 • 이춘석 • 신영대

박희승 · 이성윤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작년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,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도(道)는 '산악관광진흥지구'를 지정·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.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전북특별자치도 면적의 55%를 차지하 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.

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특별법은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공원법」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, 도내 산림 23%를 차지하는 국 유림에 부과된 규제를 풀지 못하여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악 관광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. 이에 전북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(매각 또는 교환), 사용허가를 가능토록 하여, 전북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6조제4항제12호,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4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2.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50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제2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. 제16조제4항제12호에 해당되어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로서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」 제5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

제21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51조의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따른 산악관광진흥 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국유림의 구분) ① ~ ③	제16조(국유림의 구분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	4
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	
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	
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	
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	
있다.	<u>.</u>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2.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
	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
	위한 특별법」 제50조에 따른
	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된
	<u>경우</u>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	제20조(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
교환)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	교환) ①
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	
또는 교환할 수 있다. 다만, 제2	
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	
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.	
1. ~ 2의3. (생 략)	1. ~ 2의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3. (생략)

②・③ (생 략)

제21조(국유림의 대부등) ①산림 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 부할 수 있다. 다만, 보전국유림 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.

1. ~ 13. (생 략) <신 설> 3. 제16조제4항제12호에 해당되어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로서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5 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국유림의 대부등) ①----

-----.

1. ~ 13. (현행과 같음)

14.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51조의 산악 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생 략)